

2024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 공고

경기도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4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시제품개발, 제품규격 인증 등 기술사업화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2021. 2. 28.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 법인사업자면 법인 설립연월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등록일, 공장등록일 기준

□ 지원규모 : 19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75백만 원)

※ 총 사업비의 70%이내 도지원금 지원(기업 부담금 30% 이상)

□ 지원내용(요약) : 기업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

- 기술/공정혁신 : 기술도입 및 보호, 공정개선·혁신 등
- 제품혁신 : 시제품개발, 지적권, 제품규격인증 등
- 판로개척 :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사업공고('24.2월)	· 「'24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사업신청 / 서류검토('24.2월)	· 사업신청 · 서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신청기업 경과원
서류평가('24.3월)	· 서류평가 : 재무상태, 고용증가 등	경과원
발표평가('24.4월)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수과제 선정평가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범위반기업 조회('24.4월)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범위반사항 조회	경기도
원가분석('24.4~5월)	· 시제품 개발 등 해당 시 원가분석(생략 가능)	외부 전문기관
과제선정('24.5월)	· 평틀 모두 통과기업에 대해 지원예산규모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 및 후보기업 확정	경기도, 경과원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24.5월)	· 원가분석 결과 반영된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수정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주관기관 → 경과원
협약체결('24.5월)	· 선정기업(후보기업) 오리엔테이션, 과제 승인 및 협약	경과원
사업비 지급('24.6월)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이행보증보험 발급 필수)	경과원 → 주관기관
진도점검('24.8월)	· 추진현황 점검(서면 또는 현장방문)	주관기관 ↔ 경과원 평가위원
사업완료('24.11월) 및 최종점검/평가('24.12월)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및 수정제출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최종평가)	주관기관 ↔ 경과원 평가위원
사업비 정산('25.1월) 및 지정서 수여('25.1월)	· 위탁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 사업 완료한 선도기업 지정서 수여	주관기관 ↔ 경과원 경기도 ↔ 선도기업
결과보고('25.2월) 및 사후관리('25.2월~)	· 성과관리	주관기관 ↔ 경과원

2. 신청자격

기준일 : 접수 마감일(2024. 2. 29.) 기준

신청자격

유형	자격 조건
필수 조건 (①~⑤ 모두 충족)	①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법인사업자면 법인 설립연월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등록일, 공장등록일 기준 ② 소부장의 개발 제조 매출이 50% 이상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가능 ③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기업 ④ 제조업 업종 영위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내 제조업 명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개발부서) 설치·운영
and	
선택 조건 (①~③중 1개이상 충족)	①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 직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③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지원 제외	①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2021~2023) ② 2024년 경기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③ 중앙정부 사업에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플러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3. 지원금액 및 기간 · 사업비

지원금액 및 내용 : 19개사 내외(기업당 최대75백만원)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기술·공정혁신	기술도입·보호	국내외 기술 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임치제도 등)
	디지털 공정혁신	스마트·디지털화, 로봇, IoT, 디지털 안전, 공정개선·혁신 등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개발기술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지그, 목업 등 제작 지원
	SW Licence	SW설계 맞춤형지원(EDA Tool),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CAD 등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제품규격인증	국내·외 제품규격 인증획득, 시험·분석, 컨설팅 지원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기업진단, 기업수요 맞춤 사업 도출,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시장정보분석(특허·시장동향), 자율과제(제품개선 관련 활동, 기타 컨설팅 등)
판로개척	홍보 강화	홍보물,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신기술·신상품 동향파악, GMS,(해외마케팅 대행), 바이어 발굴 등

1)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시제품개발 항목에 사업비를 편성 및 사용(소진) 원칙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 11. 3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 이상 필수 부담

[참고 1] 사업비 계상 예시

구 분	도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사업비	75,000,000원 이내	32,150,000원 이상	107,150,000원
계산식	도지원금 ≤ (총 사업비 × 0.7)	현금 ≥ (총사업비 × 0.3)	-

※ 기업부담금은 만원단위에서 올림 적용(예시, 32,142,857원 ⇒ 32,150,000원 작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4. 2. 5.(월) ~ 2. 29.(목) 15:00까지

□ 신청방법(온라인만 가능)

- 경기도 공정R&D 과제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전산 제출

① 과제책임자 및 사업담당자 회원가입(2인 필수)

- 접수 시, 신청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

②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③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5시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목록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붙임 1』 참조)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③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④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⑤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소정양식, 『붙임2』 참조)	○	
⑥	2020년~2023년 확정재무제표 각 1부. ※ 2020년~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필수 제출 ※ 선정기업은 2023년 확정재무제표 필수제출 (선정 후 별도 안내)	○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2년 12월 귀속분, 2023년 12월 귀속분) 각 1부. ※ 종사자수는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 (근로소득)만 인정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원천세	○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⑨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최근 1년 조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certi.kosha.or.kr) / 문의처 : 1644-4544	○	
⑩	소부장 매출실적 확인서(소정양식, 『붙임 3』 참조,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	
⑪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붙임 6』 참조)	○	
⑫	공장등록증명서 사본(필수조건에 경기도 내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필수제출) 1부.		○
⑬	신청자격 중 선택조건(1개 이상 충족 필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1부.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 개발현황) ※ 2023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 이상(소정양식, 『붙임 4』 참조)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
⑭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6. 평가기준 참조)		○

- 구비서류 제출 시, 파일별 연번 부여하여 제출(예)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서류 누락 시 결격처리 되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 바람

5. 지원제한

※ 지원(후보)기업으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 접수 마감일(2024. 2. 29.)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2023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⑧ 2023년도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 ⑦~⑧ 항목의 경우 선정기업에 한하여 2023 재무제표 재확인 실시, 자격요건 미충족시 선정제외
 - ⑨ 대기업·중견기업
 - ⑩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⑪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24. 1. 19.)에 의거 법 위반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 ⑫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2021~2023)
 - ⑬ 2024년 경기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사업, 소부장 탄소중립 기술사업화와 중복선정 시, 기업 의사에 따라 하나의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음
 - ⑭ 중앙정부 사업에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플러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 ⑮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6. 평가기준

□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서류평가

- 재무상태(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고용증가 등
- 서류평가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기업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 수의 2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	고용창출	가산점
평가항목	소계	매출증가율	영업이익율	부채비율	산업재해율	고용증가율	-
세부기준	-	3년간 CAGR ((22년도 매출액/ 20년도 매출액) ^(1/2)-1)×100	영업이익 /매출액×100 (22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100 (22년도)	기업 산업재해율 대비 동종업계 산업재해율 차이	23년 상시근로자수 /22년 상시근로자수 ×100-100	1건당 1점
배점	106점	30점	10점	20점	10점	30점	6점

※ 최근 3개년도(2021~2023)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경우 2022년 기준 중소기업경영지표 평균지표 대비 등급평가

※ 고용창출의 경우 경기도 취업자수(고용) 증가율 대비 등급평가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 ① 가산점은 건당 1점, 최대 6점으로 적용함
- ②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공고일[2024. 2. 5.]을 이후여야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① 경기도 핵심전략품목(「붙임 5」 참조)을 생산하는 기업
- ②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소부장넷 <https://www.sobujang.net/>에서 발급분에 한함)
- ③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④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선정기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⑥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해당 아이টে으로 사업화 추진 중인 기업(2020~2022 선정기업)
- ⑦ 대·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이행 계획서 제출기업 「붙임 7」
- ⑧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파급효과 등

※ **법위반 1회 기업에 해당할 경우 최종 발표점수에서 20% 감점(2회 이상일 경우 지원 제외)**

법위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1 참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022. 2. 6. ~ 2024. 2. 5.)** 아래 각 분야별 법을 위반한 기업
(제한기준) :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공정분야)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분야)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분야)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분야)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와 기업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선정 취소 (차순위 기업 선정)

7.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 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 목표 등에 대한 공시
- 수행기업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조사 등을 위하여 3년간 경과원의 요청(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가입기간 : 별도 안내)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 사업비는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필요시 법인카드(사업비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함(필수사항)

□ 기업선정 취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기업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수행 내용이 상이한 경우
 - 제출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부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종료시한 이내에 수행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사업 신청일 이후, 사전지원제외(신청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지원수혜자 제재사항

- 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정사용(횡령 등) 적발시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배제, 민형사상의 조치 등 실시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용

8. 문의처

전문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반도체기업종합지원센터	031)259-7022	031)259-7010	autol@gbsa.or.kr

※ G-PMS 시스템 문의 : 070-7549-3309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 [붙임]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
3. 소부장 매출확인서(서식)
4.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서식)
5.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및 확인서(서식)
6.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서식)
7. 대·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이행 계획서(서식)
8. 원가분석 세부시행 계산서(서식)

[참고1] : 소부장 산업의 범위 1부

[참고2] : PMS 사업신청 매뉴얼 1부

[별첨1]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범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끝.

[별첨1]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9.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가. 제외·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가. 적용법률
 -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2)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나.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 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협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 나. 삭제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협약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5)